

[디자인분쟁]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+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
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-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: 대법원 2018. 7. 20. 선
고 2015후1669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 및 쟁점

- (1) 대상 물품을 '의자용 등받이'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
- (2) 그러나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
- (3) 쟁점: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
2. 대법원 판결요지

구 디자인보호법(2013. 5. 28.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3

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,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대상 물품을 '의자용 등받이'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,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
첨부: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후1669 판결

변리사23년/변호사15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, 손해배상, A~Z 경력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